

#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 150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0. 7.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 중 환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 2000. 7. 1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보건소를 이용해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중 처방전에 의해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케 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본인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라는 조항을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신설

## 2. 검토결과

- 현재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는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으나 2000. 7. 1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소요예산은
  - 2000년 하반기 소요재원은 시특별교·부금에서 자치구별로 지원 집행(지원액: 18,014,500원 6.27 시로부터 통보, 7.12 간주처리)
  -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시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예정
- 보건소 진료후 원외 조제투약비는 조제약국에서 처방전 발급, 보건소에 매월 3회(1일, 11일, 21일 기준 : 공휴일엔 익일)청구, 온라인 송금 처리토록 하였고, 8. 3 현재 조제약국에서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없음.

〈 검토의견 〉

- 2000. 6. 29부터 7. 19까지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제증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건이 없었으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노우대) 〉

第26條 (敬老優待)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 및 古宮·陵園·博物館·公園등의 公共施設을 無料로 또는 그 利用料金を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經營하는 者에게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그 利用料金を 割引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에게 利用料金を 割引하여 주는 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